

---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08. 04. 09.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관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 : 2009. 03. 31
- 다. 위원회회부 : 2008. 04. 02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화공영주차장·복합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 3. 주요내용

- 도화동 181-50호 95.2㎡를 기부채납 받아 총 20필지 929.26㎡ 위에 공영주차장 3,154.30㎡(지하4층), 도화동 주민센터 등 복합청사(지상 3층) 1,334.26㎡, 총건축면적 4,488.56㎡를 건립
- 건립계획현황

소재지	지목	토 지		건 물	
		공부면적	규모	용도	건축비
도화동 181-50 일대 20필지	주차장	929.26㎡	지하 4층 3,154.30㎡ (77면) -지하1층 : 879.55㎡ (22면) -지하2층 : 879.55㎡ (22면) -지하3층 : 879.55㎡ (22면) -지하4층 : 515.65㎡ (8면)	공영주차장	7,920 백만원
			지상 3층 1,334.26㎡ -지상1층 : 404.16㎡ (3면) -지상2층 : 465.05㎡ -지상3층 : 465.05㎡	복합청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0년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편성

○ 총사업비 : 7,920백만원

○ 예산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비고	
	계	2009	2010	계	2009	2010		
내 용 별	계	4,339	2,168	2,171	3,581	2,540	1,041	
	공 사	3,907	1,736	2,171	3,240	2,199	1,041	
	용 역	208	208		156	156		
	감 리	224	224		185	185		
재 원 별	계	4,339	2,168	2,171	3,581	2,540	1,041	
	시 비 (특별교부금)	2,603	1,300	1,303	1,500	1,500		
	구 비	1,736	868	868	2,081	1,040	1,041	

#### 5. 검토결과

##### □ 제출경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화공영주차장·복합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임.

##### □ 주요내용

- 도화동 181-50호 95.2㎡를 기부채납 받아 총 20필지 929.26㎡ 위에 공영주차장 3,154.30㎡(지하4층), 도화동 주민센터 등 복합청사(지상 3층) 1,334.26㎡를 건립
- 건립예산은 총 7,920백만원이며, 공영주차장은 4,339백만원이나 이중 2,603백만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1,736백만원은 구비로 충당하고, 복합청사는 3,581백만원 중 1,500백만원은 특별교부금, 2,081백만원은 구비로 충당하며
-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50%, 2010년도 본예산에 50%를 편성 투자하려는 것임.

## □ 검토의견

- 당 사업부지 중 도화동 181-50호 95.2㎡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마건설, 마포로 제1구역 제28, 29지구)가 기부채납한 부지를 포함하여 총 20필지 929.26㎡ 부지에 지하4층 지상3층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23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지하층수 및 청사면적 조정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승인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0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임.
  
- 사업부지 주변은 마포로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이 혼잡함은 물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면수 77면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 동 통합추진으로 도화1,2동이 통합하여 도화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민원 및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주민센터가 고지대 한쪽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도화공영주차장 지상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단계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및 주민센터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따른 민원은 없는지, 또한 민원이 있다면 민원해소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